

서비스이용절차

-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각 구시정촌에 요개호 (요지원)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후, 개호지원전문원 (케어매니저) 등과 상담하여 작성하는 케어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또, 개호예방·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을 시행하는 구시정촌에서는, 상담창구에서 기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, 방문·통소 등의 개호예방·생활지원서비스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신청

-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구시정촌에 신청합니다.

[65세 이상인분]

→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과 관계없이 급부대상이 됩니다.

[40~64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신분]

→ 아래에 예를 든 특정 질병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급부대상이 됩니다.



①암 (말기) ②류마티스관절염 ③근위축성측색경화증 ④후종인대골화증 ⑤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⑥초로기 인지증 (치매) ⑦진행성 핵상성 마비, 대뇌피질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⑧척수소뇌변성증 ⑨척주관협착증 ⑩조로증 ⑪다계통 위축증 ⑫당뇨병성 신경장애,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 망막증 ⑬뇌혈관질환 ⑭폐색성 동맥경화증 ⑮만성 폐색성 폐질환 ⑯양측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



2. 요개호 (요지원) 인정

- 개호나 지원의 필요 정도를 판정합니다.

① 방문조사

신청 후에 인정조사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, 심신의 상태와 일상생활의 상황 등에 대한 정취조사를 시행합니다.

② 1차 판정

방문조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 일부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, 보건·의료·복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가 1차 판정을 확정합니다.

③ 2차 판정

1차 판정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, 개호인정심사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 판정을 시행합니다.

④ 결과 통지

2차 판정 결과에 따라 구시정촌이 요개호 (요지원) 인정 구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.

